

# The Board Bulletin

# 2020 년도 봄 연금국 소식

미국 장로교 연금국은 매 정기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연금국 소식(Board Bulletin)을 발행합니다. 연금국 소식은 주요 회의 정보뿐 아니라 연금국에서 관장하는 플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을 알려드립니다.

연금국 이사회는 2017 년의 플랜 재설계 이후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변경을 승인했습니다. 변경 사항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.

지속적이고 강력한 재정 책임에 대한 연금국 리더쉽으로 연금 부담금을 절감하고, 목회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과 기타 지원을 연장하며, 새로운 장애 보험을 통해 재정 보호를 강화하고,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.

이러한 변경은 아직 많은 목회자들이 연금국 혜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목회에 최고의 재능을 바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금국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미국 장로교의 모든 목회자와 직원 그리고 관련 기관이 복지 지원을 위한 양질의 혜택에 접근해야 한다는 연금국의 목표에도 부합합니다.

### 연금 부담금 감액

연금 부담금을 실제 급여의 11%에서 8.5%로 감액하나, 연금 혜택의 감소나 변경은 없습니다. 연금 부담금 감액은 연금국 역사상 처음이며, 이는 여러 세대동안 미국 장로교가 쌓아온 자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반영한 것입니다.

### 목회자를 위해 새로 승인된 혜택 패키지

2021 년에는 미국 장로교 목회자를 위한 두 가지 혜택 패키지가 제공됩니다; 1. 위임 목회자들을 위한 Pastor's Participation Plan (새로운 단기 장애 보험 포함), 2. 비위임 목회자들을 위한 새로운 패키지, <u>Minister's</u> Choice.

새로운 패키지인 Minister's Choice 에는 새로운 단기 장애 보험 및 고용인 보조 프로그램 (Employee Assistance Program), 연금 및 사망/장애 보험이 포함됩니다. 이 패키지의 비용은 실제 급여의 10%이며, 교회/고용기관이 부담금 전체를 지불해야 합니다. 비위임직책을 일주일에 최소 20 시간 이상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이 패키지에 가입 자격이 됩니다. 교회/고용기관은 추가로 선택 보험을 같이 제공할 수 있으며, 비용 분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Minister's Choice 는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고, Pastor's Participation Plan 를 통해서만 제공했던 다음과 같은 보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; CREDO,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,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, Sabbatical Support. 또한 Emergency Assistance, Adoption Assistance 및 Transition-to-College 보조 프로그램 자격도 제공합니다.

### Pastor's Participation Plan 부담금 4 년째 37% 유지

2021 년 Pastor's Participation Plan 부담금은 실제 급여의 37%로 유지될 것입니다; 의료 보험 27%, 연금 8.5%, 사망 및 장애 보험 1%, 새로운 혜택인 단기 장애 보험 0.5% 입니다. 4 년 연속으로 총 부담금을 37%로 변동없이 유지됩니다.

이사회는 교회가 의료 보험 부담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액을 연 33,500 달러로 올리고, 최소 부담금은 연 11,000 달러로 유지하기로 표결했습니다.

참고: Pastor's Participation Plan 를 통하지 않고 각 교회나 고용기관에 적용되었던 의료 보험 비용은 2021 년 7 월 중순부터 Benefits Connect 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 2021 년 4 가지 재정 보호 프로그램

사망 및 장애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보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. 사망 및 장애 보험은 Pastor's Participation Plan 및 Minister's Choice 을 통해 연금과 함께 제공되며, 두 가지 페키지 방법외에 비기여 기준(noncontributory basis)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.

이사회는 두 가지 새로운 장애 보험을 승인했고, 교회와 고용 기관이 더 많은 목회자들과 직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보험과 Group Term Life 보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단기 장애가 발생할 경우, 새로운 단기 장애보험은 가입자에게 실제 급여(2020 년 IRS 최고 급여 285,000 불로 제한)의 60%에 해당하는 재정적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보험은 14 일간의 Waiting Period 후에 최대 90 일까지 혜택이 지급됩니다. 단기 장애 보험은 Pastor's Participation Plan 과 Minister's Choice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혜택 패키지 외에도, 교회/고용 기관은 자격이 있는 목회자/직원에게 기여(contributory basis) 또는 비기여 기준(noncontributory basis)으로 이 단기 장애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새로운 장기 장애 보험은 90 일 초과 장애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에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혜택이며, 장애 기간 동안 실제 급여(2020 년 IRS 최고 급여 285,000 달러로 제한)의 60%에 달하는 재정적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사망 및 장애 플랜과 함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.

이사회는 단기 및 장기 장애 보험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재정 보호를 승인하는 것 외에도 Term Life Plan 을확대했습니다. Term Life Plan 는 2020 과 동일한 저비용 혜택을 제공합니다. 그러나 고정된 보험 보상 범위(\$5,000 에서 \$50,000 사이) 외에, 가입자 실제 급여의 1 배인 최대 \$50,000 의 소득 기반 혜택 금액인 새로운 보상 범위을 포함합니다. 두 가지 보상 옵션 중 어느 쪽이든, 교회/고용기관은 Term Life Plan 을 제공할 때 부담금을 100%지불해야 합니다.

# 보조 프로그램 자격 확대

이사회는 비위임목회자들을 위해 새로운 만든 패키지 Minister's Choice 외에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도 확대했습니다(*승인된 새로운 혜택 Mnister's Choice* 참조). 의료 보험 *또는* 연금 가입자들도 입양 보조금(Adoption Assistance) 및 대학 입학 자녀를 위한 Transition to College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. Retiree Medical assistance 는 연금국 Medicare Supplemental Plan 가입한 은퇴자 및 자격이 있는 연금 수령자, 배우자 및 생존 배우자도 자격이 됩니다. 가구 소득과 같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.

# 흑인계 교회를 위한 사역 지원 확대

연금국은 위임 목회자가 없는 흑인계 교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. 등록 교인수가 300 명 이하인 흑인계 교회에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. 본래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은 등록교인이 150 이하인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. <u>Pathways to Renewal</u>은 획기적으로 절감된 부담금으로 교회가 젊은 목회자에게 Pastor's Participation Plan 의 모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

### 포트폴리오 기간의 목표 수익 초과

부사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인 Judith D. Freyer 는세계 경제 및 정치 사건의 틀 안에서 연금국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습니다. 모든 기간에서 목표 수익률 6%를 초과했습니다; 20 년 투자 이익 = 6.3%, 15 년 투자 이익 = 6.9%, 10 년 투자 이익 = 8.6%, 5 년 투자 이익 = 7.3%, 3 년 투자 이익 = 9.8%, 1 년투자 이익 = 17.8%.

포트폴리오는 연금, 사망 및 장애 보험, 기부 기금 및 보조 프로그램 자산과 연금국에 주어진 기부에 대한투자 펀드입니다. 2019 년 12 월 31 일, 연금국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는 \$10.2 billion 였습니다(2019 투자검토를 참조하십시오).

투자위원회 위원장 Suzanne P. Welsh 는 가입자 및 수혜자를 대신하여 투자위원회의 업무 개요를 제공했습니다. 2019 년 자산 책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ASB 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장기 전략적 자산 할당범위를 승인했습니다.

위원회는 사모펀드 10%, 부동산 5%라는 초기 목표를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. 위원회는 사모펀드 및 부동산에 대한 비유동 사기업 파트너십 투자와 국제 주식 관리자에 대한 추가 배분을 승인했습니다.

위원회는 미국 장로교 403(b)(9) 은퇴 저축 플랜 및 401(k) 신약 은퇴 저축 플랜에서 자산 배분, 투자 성과 및 투자 옵션의 비용을 검토했습니다. 위원회는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미국 및 국제 주식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신흥 시장 주식 전략을 승인했습니다.

# 경험 분배 (Experience Apportionment) 승인

이사회는 연금국 경험 분배 정책 지침에 따라 연금 플랜에 대해 2%의 경험 분배를 승인했습니다. 이 경험 분배 승인은 2019 년 말 기준 123.8%였던 연금의 전체 자금 상태를 고려했습니다. 정책 지침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합니다;

- 연금 장기 재무 안정성 보장
-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입자 보호
- 세대 공평성 유지

이번 경험 분배는 2020 년 7월 1일에 지급되며, 금년을 포함해서 8년 연속 경험분배로 총 26.4% 누적 인상률를 기록했습니다. 경험 분배는 연금국이 균형있게 장기적으로 투자한 결과라는 것을 이사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.

## 장애 보험 혜택 증액 승인

2019 년 12 월 31 일자로 장애 보험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2% 증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이러한 증가는 장애 보험 혜택의 인플레이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이사회는 투자 및 보험 수리적 경험, 적립금 및 인플레이션을 검토한 후 혜택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사망 및 장애 보험의 자산과 부채는 연금국의 다른 보험들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

#### 최소 분배 연령 규정 수정안

이사회는 2019 년 12 월 20 일에 제정된 SECURE 법에 따라 미국 장로교 연금 혜택 및 은퇴 저축 플랜 (Retirement Savings Plan)에 적용되는 최소 분배(Required Minimum Distribution) 연령을 수정했습니다. 새로운 법은 2019 년 12 월 31 일자로 70½세가 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최소 분배 연령을 70½세에서 72 세로 연장했습니다.

### 내년 이사회 리더십 선출

이사회는 224 차 총회(2020 년)가 끝난 후 아래의 현재 임원들 중에서 1 년 임기의 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Fredric J. Bold Jr., Chairperson

Larry Palmer, First Vice Chair

Suzanne P. Welsh, Second Vice Chair

Rev. Dr. Fairfax F. Fair 는 총회 종결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.

다음 이사회 회의는 2020 년 7 월 16-18 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<u>기업 비서</u>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15-587-7600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.